

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 2022. 9. 28 선고 2022가단21305 판결 [사해행위취소]

전 문

원 고 한국자산관리공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세계로담당변호사 안진술

소송복대리인 변호사 권종원

피 고 A

변 론 종 결 2022. 8. 31.

판 결 선 고 2022. 9. 28.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와 소외 B(주민등록번호 1 생략)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2/32 지분에 관하여 2019. 9. 9. 체결된 상속재산협의분할계약을 취소한다. 피고는 소외 B(주민등록번호 1 생략)에게 별지 목록 기재 1 내지 3 부동산 중 2/23 지분에 관하여 청주지방법원 단양등기소 2019. 10. 2. 접수 제7124호로 마친 각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 절차를 각 이행하고, 원고에게 2,014,5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C유한회사는 B에 대하여 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 단양군법원 2010가소1202호로 B이 위 회사에 대하여 57,699,691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판결을 받았고, 위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으나 B은 일부만 변제하고 나머지를 변제하지 아니하였다.

원고는 2018. 12. 27. C유한회사의 B에 대한 위 판결금 채권을 양수하였고, B에게 양도 사실을 통지하였으며, 소멸시효 연장을 위하여 B에 대하여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20차전 41876호로 지급명령 신청하여 2020. 10. 16. B이 원고에게 75,738,895원 및 그 중 14,513,317원에 대하여 2019. 6.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지급명령을 받았으며, 위 결정은 2020. 10. 20. B에 송달되어 2020. 11. 4. 확정되었다.

나. B의 부친인 D은 2009. 8. 13. 사망하였고, D(이하 ‘망인’이라 한다)의 상속인으로는 배우자인 E, 자녀 피고, F, G, H, I, J, B, K, L, M이 있는데, 피고와 공동상속인들은 2019. 9. 9.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피고가 단독으로 상속한다는 내용의 상속재산분할협의(이하 ‘이 사건 분할협의’라 한다)를 하였으며, 2019. 10. 2. 위 각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 앞으로 이 사건 분할협의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피보전채권

위 인정사실 및 갑 제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B에 대하여 가지는 양수금 채권은 이 사건 분할협의 이전에 발생하였으므로, 사해행위 취소의 피보전채권이 된다.

나. 사해행위 성립 여부

1) 관련 법리

이미 채무초과의 상태에 있는 채무자가 상속재산의 분할협의를 하면서 자신의 상속분에 관한 권리를

포기함으로써 일반 채권자에 대한 공동담보가 감소된 경우 원칙적으로 채권자에 대한 사해행위에 해당한다(대법원 2007. 7. 26. 선고 2007다29119 판결 등 참조).

다만, 이와 같이 상속재산분할협의 결과 공동담보가 감소되었다 하더라도, 그 재산분할결과가 구체적 상속분에 상당하는 정도에 미달하는 과소한 것이라고 인정되지 않는 한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할 것은 아니고, 구체적 상속분에 상당하는 정도에 미달하는 과소한 경우에도 사해행위로서 취소되는 범위는 그 미달하는 부분에 한정하여야 한다. 이때 지정상속분이나 법정상속분이 곧 공동상속인의 구체적 상속분이 되는 것이 아니고 특별수익이나 기여분이 있다면 그에 의하여 수정된 것이 재산분할의 기준이 되는 구체적 상속분이라 할 수 있는바(대법원 2013. 5. 9. 선고 2012다69982 판결 등 참조), 지정상속분이나 기여분, 특별수익 등의 존부 등 구체적 상속분이 법정상속분과 다르다는 사정은 채무자 및 수익자가 주장·입증하여야 한다(대법원 2001. 2. 9. 선고 2000다51797 판결 참조).

2) 판단

을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각 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 등 망인의 공동상속인은 이 사건 분할협의 시 이 사건 부동산을 피고의 기여분으로 인정하기로 협의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그렇다면 B에게는 구체적 상속분이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분할협의를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이 사건 분할협의를 사해행위에 해당함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청구는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① 피고는 망인의 차남으로, 망인 소유의 주택이었던 별지 목록 제1, 2항 기재 부동산에서 2014년경부터 모친과 함께 거주하고 있다.

② 피고는 1993년 건축된 망인 소유 주택을 상당한 비용을 들여 수선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 재산분할협의를 위와 같이 피고의 모친에 대한 부양 및 상속재산의 유지·관리에 대한 기여를 고려하여 이루어진 것으로 보인다.

③ 이 사건 재산분할협의를 피고의 기여분을 고려한 취지가 아니라면, B뿐만 아니라 수인의 공동 상속인들이 모두 자신의 상속분을 포기한 것을 설명하기 어렵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새미